

의안번호	2204884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8.
추 계 번호	24F457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등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,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년 290억원, 2031년 290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1,450억원(연평균 29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안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 감면실적이 부재하여 안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감면을 인상(10%→50%) 효과는 추계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,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소추계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및 소득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(안 제8조의3제1항)	-290	-290	-290	-290	-290	-1,450	-290

주: 세금징수기준 집계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3제1항 (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30년말로 5년 연장하고,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 -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율: (현행) 10% → (개정안) 50%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 및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의3제1항 (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귀속소득 분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하고, 세수효과는 세금징수기준에 따라 집계
 - 2026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액감면(공제) 세수효과는 신고·납부기준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
 - 현행법의 적용기한이 2025년말이므로,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수효과가 나타나는 2026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에서 제외
-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(2020~2024년) 감면실적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추계함
 -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연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추계
 - 최근 5년 평균 감면실적: 290억원
- 다만, 개정안은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공제율만 현행 10%에서 50%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현행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 감면실적의 구분이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공제율 인상의 세수효과는 추계에서 제외함
 -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, 세액감면 신청 시 각 호별 구분에 따른 신청을 받고 있지 않아 세부실적에 대한 정보 부재

-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10%로 유지됨을 가정하여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내국법인이 대·중소 상생협력을 위하여 상생협력 기금에 출연하는 등의 경우,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
 - 동 제도는 대·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2010년 도입되었으며, 현행 다음의 공제내용을 2025년말까지 적용

[표 2]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(안 제8조의3)의 항목별 내용

항목	공제요건	공제내용
제1항	－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, 대·중소기업 협력재단, 농어촌 상생협력기금, 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,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출연시	출연금의 10% 공제 (법인세)
제2항	－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시	장부가액의 3% 공제 (법인세)
제3항	－ 내국인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투자금액 발생시	시설투자금액의 1% 공제* * 단, 중견기업 3%, 중소기업 7% (소득세·법인세)

- 2010년 도입된 이래 세법개정을 통해 공제대상 및 공제율이 확대되는 추세
 - － 2018년 개정으로 내국인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투자금액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1~7%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도입
 - ※ 기업규모별 공제율: 일반 1%, 중견기업 3%, 중소기업 7%
 - － 2022년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시설등을 대학 및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자산 시가의 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도입

[표 3]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요 연혁

시행시기 (귀속연도 기준)	주요 개정내용
2011년 (도입)	내국법인의 신용보증기금 등의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- 공제율: 7%
2017년	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한 공제율 상향 - 공제율: 7% → 10%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시 자산의 장부가액 일부를 세액공제 - 공제율: 3%
2019년	내국인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 - 공제율: 1%(단, 중견기업 3%, 중소기업 7%)
2023년	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시설등을 대학 및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자산 시가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 - 공제율: 10%

□ (감면실적) 조세지출예산서에 집계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 및 전망치는 아래 표와 같음

-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은 출연금의 10%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

[표 4]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
법인세	202	212	329	409	296
소득세	0	0.8	0.5	0.5	0.2
계	202	212.8	329.5	409.5	296.2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나.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

□ (추계방법) 일몰기한 연장 세수효과는 [표 4]의 2020년~2024년도 실적 및 전망치 평균(290억원)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- 2020~2023년까지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가 2024년 잠정치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감소($\Delta 27.7\%$)할 것으로 전망되어 증감추세가 불규칙하므로, 연평균 감면액을 기준으로 추계

- (추계결과) 개정안에 따라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년 290억원, 2031년 290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1,450억원(연평균 29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및 소득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(안 제8조의3제1항)	-290	-290	-290	-290	-290	-1,450	-290

주: 세금징수기준 집계임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